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10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1. .

나. 제안자 : 이한구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2. .

라. 상정일자 : 2014. 2. 10.(제213회 임시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이한구 의원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현기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 구성·운영 반영

나. 주요골자

-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·운영 함(안 제6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계획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, 주민, 학생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의 미래상과 전략과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,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시민계획단의 구성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율을 제고 할 수 있는 관심사항 발굴과 시민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한 참여방법 설정 등 운영의 내실성 확보가 필요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시민계획단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? (이재호 의원)
⇒ 상위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므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.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.
- 시민계획단 운영을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...(정수영 의원)
⇒ 시에서도 적극 추진할 생각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강제조항으로 수정하신다면 그에 따르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, 이재호, 전원기, 전용철 의원
나. 반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7, 찬성 : 7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 끝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의견청취 및 공청회)”를 “(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<u>의견청취 및 공청회</u>) ① 시 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 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 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<u>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</u>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있으며, 이</u> <u>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</u> <u>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</u> <u>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</u> <u>계획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